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의안 번호	6269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수사기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 일곱 명의 내란범죄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하였음.

이 과정에서 아래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제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지도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군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5조제2항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사무의 최종 책임자로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에도 국회경비대에 대한 궁극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해태하여 국회경비대의 내란 방조 행위에 대해 형법 제87조(내란)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였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계엄군은 오히려 저지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찬반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

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한 것으로 형법 제87조(내란)를 위반하였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였고, 또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보좌직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였음. 또한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이상 일곱 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체포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함.